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033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367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20373호)

검 토 보 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독립 법인화〉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문 성 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독립 법인화 필요성.....	6
2. 독립 법인화를 위한 절차적 사항 및 수행사업 등 규정.....	15
3.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가	20
4.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23
5. 독립 법인화에 따른 수행사업 근거 조정 등	25
6. 부칙: 시행일.....	35
7. 부칙: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준비, 채권·채무 등 경과조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36
※ 참고자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현황.....	38

I. 제안경위

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033호)

-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1인
- 2) 발의연월일 : 2026. 4. 1.
- 3) 회 부 일 : 2026. 4. 2.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367호)

-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2인
- 2) 발의연월일 : 2026. 8. 3.
- 3) 회부연월일 : 2026. 8. 4.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20373호)

-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1인
- 2) 발의연월일 : 2026. 8. 3.
- 3) 회부연월일 : 2026. 8.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033호)

☐ 제안이유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안보·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음.

또한,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군을 정예화하고 첨단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과감히 도입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방과학기술의 혁신과 K-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주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수출진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방핵심기술의 기획·관리·평가’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부 등 타 부처의 전문기관과

달리 법인격이 없는 부설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상 독립적 지위가 미흡하고, 이에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기관으로 승격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고, 설립등기·정관·수행사업 등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33조).

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이 참석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4호).

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60조제2항).

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승격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수행사업에 맞게 조정함(안 부칙 제2조).

마.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에 따라 설립준비 및 경과조치 등을 규정함(안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367호)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군을 정예화하고 첨단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과감히 도입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주기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명시된 ‘국방기술의 기획·관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373호)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안보·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 산업이 되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K-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수출진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독립 법인화 필요성

가. 개정안 개요

3건의 개정안은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분리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고, 이에 맞추어 법인 설립에 따른 절차적·행정적 사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법인화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법인 설립에 따른 구체적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검토함.

나. 독립 법인화 필요성

① 현재 인사·예산 등의 독립적 운영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19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국방기술기획평가원’과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대신 두 기관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으로 2021년 출범하였으며, 모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인사·예산’이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¹⁾

1) 국방기술품질원 장관

이에 따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예산·결산, 기획·운영 등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모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과 별개로 시행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시스템(ALIO)에도 별도로 공시하고 있음.

참고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이었던 요업기술원이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독립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승격된 사례가 있음.²⁾

② 방위산업 성장에 따른 독립된 전담기관으로서의 중요성 부각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및 기술정보·성과물 관리 등의 업무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수출진흥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이는 업무성격상 국방과

제16조의2 부설기관) ① 기품원은 제4조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16조제5항에 따라 부설기관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둔다.

② 부설연구소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그 활동과 운영을 위한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다.

③ 부설연구소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한다. 부설연구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될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한다.

④ 기타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르며 운영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0.08.31]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9. 1. 30. 일부개정) 주요내용

마. 요업기술원의 병칭변경과 독립법인화(법 제39조의2 신설)

요업기술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이나, 예산·결산, 기획·운영 등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고객만족도 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 중인 각종 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리하고 그 명칭도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함.

학연구소의 무기체계 등 연구개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및 신뢰성평가 등과 확연히 구별됨.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정체성 및 주요사업]

구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체성	연구개발 기관	품질보증 및 신뢰성연구 기관	R&D 기획·관리·평가 / 방위산업 육성 기관
주요 사업	▫전략·비닉무기체계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군 밀접분야 첨단무기 연구개발 등³⁾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연구개발 등⁴⁾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 지원 등⁵⁾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지원, 군수품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 수출품 품질보증 등⁶⁾ ▫무기체계 시험평가 지원⁷⁾,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⁸⁾ ▫방산기술보호 등⁹⁾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국방기술 R&D 기획·관리·평가¹⁰⁾ ▫지역 기반 상생협력을 통해 방위산업을 첨단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¹¹⁾ ▫K-방산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경쟁력 제고¹²⁾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 방산시장에서 주요 방산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음.¹³⁾ 한국 방위산업은 무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3)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5)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제12조

6) 「방위사업법」 제32조

7) 「방위사업법」 제21조

8)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

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6조의2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8조,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9조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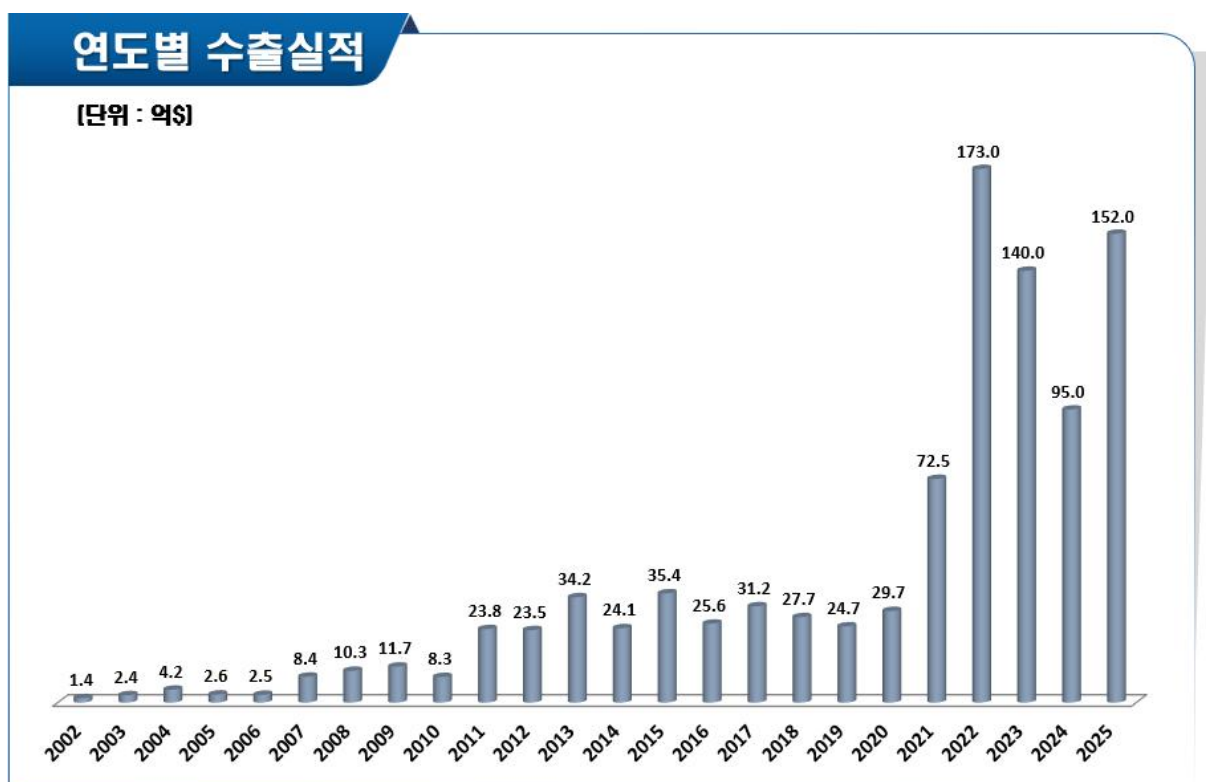
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13) 2025년 폴란드와 K2 2차(약 65억달러)·천무(39억달러) 등 대형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는 등 신속한 납

등에 대한 급격한 수출 증가를 계기로 새로운 국가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음.¹⁴⁾

최근 10년간 방산수출(계약) 실적을 보면, 2016년 25억 6,000만 달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인 2022년 17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95억 달러를 거쳐 2025년 152억 달러로 다시 크게 확대되는 등 상승 흐름이 재확인되고 있음.

[최근 방산물자 수출계약 현황]



* 자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기·가성비 및 현지생산·후속군수(MRO) 패키지로 경쟁력을 갖추고, 유럽 중심 성과를 발판으로 중동·아시아 등으로 수출처를 넓히는 다각화를 동시에 진행하며 방산 4대강국 진입 목표를 구체화하는 중임.

14) 이지윤, 조원호 (2025) K-방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 : 수출금융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위산업학회지, 32:3, 165-182

또한, 인공지능·반도체·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에의 활용이 핵심적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방위산업 육성·지원과 국방과학기술 기획·평가 등을 전담하는 국방기술진흥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도 중요시되고 있음.

③ 부설기관 형태 운영에 따른 업무수행의 비효율 발생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그 권한 행사와 업무수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있음.

「방위사업법」¹⁵⁾에서는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수행하는 업무도 다수 포함돼있으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실질적으로 인사운영 및 업무의 수행을 국방기술품질원과 별개로 수행하고 있고, 반면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그 해당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15)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있지 않음에도 법적으로는 소송¹⁶⁾의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근 방산수출 지원 등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의 국제적·대외적 역할도 그에 걸맞게 중요해지는데, 부설기관장으로서의 지위로 인해 대외적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따름.

④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인력·예산 및 기능확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1년 출범 이후 업무와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이 494명에서 686명으로 증가하였고, 예산도 3,539억원에서 1조 1,47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¹⁷⁾

16)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직원 채용 관련 소송,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관 연구개발과제 협약 관련 소송 등

17)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예산 비교(이사회 의결 기준)

구 분	2021년		2026년	
	국방기술 품질원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국방기술 품질원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총 예산	1,151억	3,525억	3,145억	11,479억
인건비	485억	277억	594억	321억
운영비	42억	19억	95억	39억
고유사업비	571억	215억	572억	298억
위탁사업 출연금	53억	3,009억	1,798억	10,775억
연구개발 적립금	-	5억	87억	46억

⑤ 법인화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 크지 않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현재도 인사·예산 및 기관운영을 상당 부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필요한 사무공간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다만, 독립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 기능의 확충 등에 따라 일부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⑥ 다른 부처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부 등 타 부처의 기획·관리·평가 기관과 산업육성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별도의 법적 설립근거를 확보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부처별 R&D 기획·평가 및 산업육성·진흥 기관 현황]

부처	기관명	임무	인력 (정규/기간)	예산	설립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R&D 기획·관리·평가	626 / 54	8조 2,338억원	한국연구재단법
	과학기술사업 화진흥원	산업육성·진흥	102 / 5	1,351억원	연구산업진흥법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R&D 기획·관리·평가	410 / 23	3조 3,409억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산업육성·진흥	435 / 8	2조 848억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처	기관명	임무	인력 (정규/기간)	예산	설립근거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R&D 기획·관리·평가	291 / 61	1조 8,278억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산업육성·진흥	1,473 / 67	8조 1,933억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후에 너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R&D 기획·관리·평가 / 산업육성	667 / 45	9,577억원	한국환경산업 기술원법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R&D 기획·관리·평가	191 / 10	1조 1,560억원	에너지법
보건복지 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R&D 기획·관리·평가 / 산업육성	437 / 81	1조 2,104억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법
국토교통 부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R&D 기획·관리·평가 / 산업육성	155 / 34	5,478억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향후 방위산업이 더욱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그 위상이 상승할 것을 고려하면 국방분야의 기술기획·관리·평가와 방위산업 육성·수출진흥을 모두 전담하는 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또한 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다. 관계부처(국방부) 의견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현재 운용하는 예산규모와 수행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부설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온전히 가져야 할 필요성에 동의함.

라. 소 결

□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인사·예산 및 사업 운영 등에서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방산수출 확대와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부설기관 체계로는 기관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상응하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 법인화할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독립 법인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 효과와 함께 양 기관 간 관리·지원 기능의 중복 가능성 및 추가적인 행정비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독립 법인화를 위한 절차적 사항 및 수행사업 등 규정

- 개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고, 설립
등기·정관·수행사업 등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2조의3).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3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 ① 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과 방위산업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설립한다. ②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 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

현행	개정안
	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 3.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4.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정부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등기, 정관 및 수행사업 등에 관한 개정안의 기본적인 입법체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방위사업법」의 조문체계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수행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설 조문의 조문번호, 정관 인가 절차 및 일부 수행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제32조의3을 신설하여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5년 12월 신설되어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32조의3(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을 고려하여 조문 번호를 제32조의4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 제32조의3제5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정관 작성 등의 경우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방위사업청장이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정관의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¹⁸⁾

□ 셋째, 개정안 제32조의3제6항제3호의 ‘군수품의 표준화’ 업무는 법 제32조제6항제8호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로 지정되어 있고, 독립 법인화의 취지가 양 기관의 권한·책임을 구분하는 데 있으므로 동일 업무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법정사업으로 다시 규정할 실익이 없고 오히려 업무중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¹⁹⁾

□ 넷째, 개정안 제32조의3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사업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다른 법률을 인용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 사업을 규정하는 방식은 법률 간 중복을 방지하고 개별 정책법과의 연계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18)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 2. 4., 2020. 3. 31., 2023. 6. 20.>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

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8.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9.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러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면서 「방위사업법」을 그 설립 근거법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연구소의 핵심적인 기능과 사업 범위를 설립 근거법에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기관의 법적 지위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 제32조의3은 직접적인 조직법적 근거와 수행사업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업무위탁 규정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등과 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32조의3제6항에 수행 사업을 ‘국방과학기술의 기획·관리·평가, 방위산업 육성·기업지원·수출진흥 등’ 연구소의 핵심기능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가

□ 개정안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 3. (생략) 4. 국방과학연구소장,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및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의 장 5. 6. (생략) ⑤ (생략)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제32조의3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 ----- 5.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방위사업법」 제9조²⁰⁾에 따르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사업

20) 「방위사업법」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위원장(국방부장관)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위원은 국방부차관, 국방부 등 각 기관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등임.

-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7.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1의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방부차관
 2.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국방과학연구소장,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및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의 장
 5.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구성(「방위사업법」 제9조)]

- 당연직: 18명
 - 국방부 장관·차관, 차관보
 - 방위사업청장·차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미래전력사업본부장
 -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육·해·공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직무대리
 -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한국국방연구원장
- 국회 추천: 4명
- 방위사업청장 추천: 3명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²¹⁾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 관점에서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을 추가하되 현행 위원 정원 25명 이내에서 기존 위원 구성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 정원의 상한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함.

21) 전순기(全循期) 관리란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선정·수행·평가·성과활용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Life Cycle)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4.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 개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생략)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방기술품질원의</u>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② <u>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u> ----- ----- ----- ----- ----- -----.

- 현행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임직원도 당연히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포함되므로, 실질적으로 국방기

술진흥연구소 임직원의 신분상 지위에 영향이 없음.

다만, 독립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임직원의 지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5. 독립 법인화에 따른 수행사업 근거 조정 등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²²⁾

현행	개정안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 7. (생략)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9. (생략)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① ----- ----- ----- -----제32조의4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9. (현행과 같음)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

2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며, 「방위사업법」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으로 발의되어 있음. 이하에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방기술품질원의 장</u>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발 성과물의 활용·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 3. 제1항제7호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국방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u>, <u>국방기술품질원의 장</u>----- ---.2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산업체 등,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이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제32조의4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 ----- -----.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현행	개정안
국산화개발 촉진 등) ① ~ ④ (생략) ⑤ 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국방과학연구소 장·<u>국방기술품질원장</u>은 부품국 산화개발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 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u>국방기술품질원</u>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 11. (생략)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u>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u>	국산화개발 촉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u> <u>국방기술품질원장</u>----- ----- -----.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① ----- ----- -----<u>국방기술진흥연구소</u>----- ----- -----. 1. ~ 11. (현행과 같음)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 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u>국방기술품질원</u>에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 다. <u>1.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 출진흥 업무에 관한 지원</u> <u>2. 제1호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 석·평가 및 사후관리</u> <u>3.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 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 장이 위탁하는 업무</u>

설기관임을 고려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양 기관의 모든 사업을 위탁하고 있고,²⁵⁾ 국방기술품질원 정관에서 양 기관의 수행사업을 구분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국방기술품질

25)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개정 2014. 5. 9.>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 2. 4., 2020. 3. 31., 2023. 6. 20.>

1. 삭제<2020. 3. 31.>
2. 삭제<2020. 3. 31.>
3. 삭제<2020. 3. 31.>
4. 삭제<2020. 3. 31.>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
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8.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9.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6. 3. 10.>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
3.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
4. 제12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관리
5.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
6. 「방위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 및 연구 결과의 관리
7. 「방위사업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국방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3.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
5. 민간개발 장비·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시험 지원
6.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7.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
8.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9.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11.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설립됨에 따라 양 기관의 수행사업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 사업으로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²⁶⁾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16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으로도 규정하여 중복되고 있음.²⁷⁾

또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8조제1항제9호에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사업으로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관한 지원”²⁸⁾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

26)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
3.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
4. 제12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관리
5.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확충지원 및 활용 촉진 등
6. 「방위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 및 연구 결과의 관리
7.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국방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7) 이외 개정안 제16조제2항제3호 “제1항제7호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업무도 양 기관에 중복 규정되어 있음.

2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3.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
5. 민간개발 장비·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시험 지원
6.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7.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

정안 제18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으로 중복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국방기술품질원 정관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 및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관한 지원” 관련 조항은 양 기관에서 나누어 수행 중임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임.

[국방기술품질원 정관에 따른 업무분장]

제4조(사업) ① 기품원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위사업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기품원에 부여된 사업 (이하 생략)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품원에 부여된 사업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 (이하 생략)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품원에 부여된 사업 (이하 생략)

자.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차. “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카.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 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부설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9.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11.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1. 제4조제1항제1호 마목의 사업
2. 제4조제1항제2호 가목 사업,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 나목·다목·사목·자목 사업 중 부설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
3. 제4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 자목과 차목의 사업 중에서 부설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 카목 사업
4.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 등의 기술지원 및 기술 조사·분석
5.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과제 관리 및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독립 법인화의 주된 취지가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사업을 양 기관의 법정사업으로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인화의 취지와 다소 상충할 소지가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 법인화는 종전 하나의 법인격 아래에서 운영되던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리·명확화하려는 데 중요한 입법취지가 있음.

그런데 독립 법인화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양 기관의 법정사업으로 중복하여 규정할 경우 기관 간 업무영역이 불명확해지고, 향후 사업 수행 주체 및 예산 배분 등을 둘러싼 업무 중복 또는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과 고유 기능에 따라 법정

수행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만, 사업의 성격상 양 기관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를 유지하되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기관별 역할과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은 다부처 협력 우주연구개발사업 기획, 수출품 품질보증 및 품질인증지원(DQ마크) 등 해당 근거에 기반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며,²⁹⁾ 향후 국기연이 독립하더라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이들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할 예정으로, 기관 분리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양 기관에 근거를 유지하자는 의견임.³⁰⁾

29) [기관별 현행 근거별 연관 사업]

항목	사업 및 '26년 예산 규모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	[기품원] 다부처 협력 우주연구개발사업 기획등 ('26년 약 1,669억) [국기연] 핵심기술·전력지원체계·국방반도체 R&D 기획·관리, 국방연구개발사업 평가/성과분석 등 ('26년 약 6,447억)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관한 지원	[기품원] 수출품 품질보증 및 품질인증 지원 ('26년 약 1.3억) [국기연] 해외 방산시장 조사분석, 수출시장 조사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지원, 무기체계 개조개발, 전시회 참가지원, 수출펀드 등 ('26년 약 972억)

30) 2026년 9월 시행 예정인 「방위사업법」 제21조의2에서는 무기체계 등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6. 부칙: 시행일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으나, 기관 설립, 조직·인력 및 재산의 승계,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 법률 간 시행시기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준비기간을 둘 필요가 있음.

이를 고려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개 법률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 법인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되어 있고, 조직·인력·재산의 승계 및 하위법령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일을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7. 부칙: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준비, 채권·채무 등 경과조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 개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위원구성, 채권관계
및 직원 등의 승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부칙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도 각각 부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제3조(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준비) ①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 공포일 부터 30일 이내에 10인 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 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 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채권·채무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방기술품질원이 소속기구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의 명의로 한 행위와 관련된 채권·채무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자산 중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이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국방기술

개 정 안

진흥연구소가 승계한다.

②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 당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과 동시에 정관이 정하는 기능·조직 및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이 행한 행위 중 방위사업청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방위사업청장이 한 것으로 보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수행 중인 사업 및 체결한 계약·협약상 지위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관한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문 의 처

02)6788-5312

※ 참고자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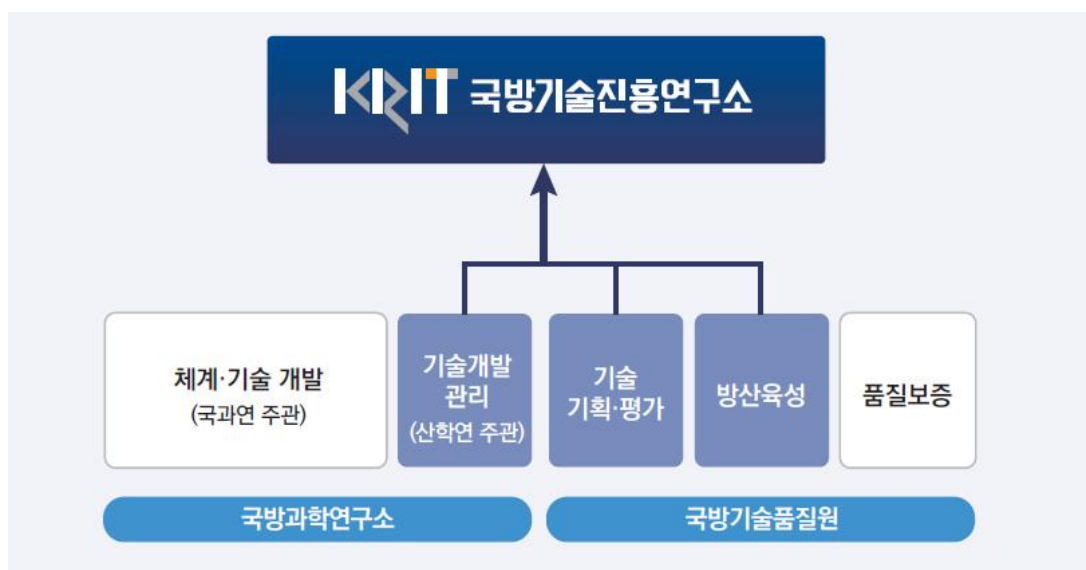
1. 설립 및 주요연혁

□ 설립근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 국방기술품질원 정관 제16조의2(부설기관):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부설기관

□ 주요연혁

- '18년 「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 따른 방위사업혁신계획 수립
 - * (국방R&D 재구조화) 「국방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방위산업진흥원」 신설
- '19년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및 방산육성 전문기관 신설 검토(방사청)
 - * (기재부 의견, '19. 7. 8.) 기품원의 부설기관으로 출범 후 단계적 독립 법인화 필요
- '21년 1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설립
 - *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와 방산육성·수출진흥 전담수행



2. 임무 및 기능

☐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 미래국방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술정책 연구 및 기술 수준·예측조사
- 무기체계 국내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과제기획·개발관리
- 도전적 연구개발 여건을 조성하는 평가 및 성과분석

⇒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선제적 확보

☐ 방위산업 육성 지원

- 고부가가치 첨단 부품·소재·장비 개발과제 기획·관리
- 방산 중소·벤처 기업 육성 및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

- 권역별·국가별 맞춤형 방산수출 전략 수립
-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방산 수출품목 다변화

⇒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지원

☐ 무기체계 획득 및 전력지원체계 연구

- 무기체계 획득방안 수립을 위한 소요기획 지원 및 선행연구 조사분석
- 피복·방탄·개인장비 등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 과제기획, 개발관리

⇒ 효율적인 획득방안·사업추진방안 제시

☐ 국방과학기술정보 및 개발성과물 관리

- 국방연구개발 과제·성과 정보 수집·관리·유통
- 성과의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등 개발성과물 관리

⇒ 국방과학기술 정보·성과 확산

3. 조직 및 인력, 예산 개요

□ 조 직 : 2본부 / 13부·센터 / 45실·팀·단



□ 인 력

(단위 : 명 / '26.4 기준)

구 분	총 계	정규인력			정규인력 외		
		정규직	무기직	계	기간제	현역	계
정원	695	300	80	380	306	9	315
현재원	597	267	77	344	246	7	253

* 총 정원 대비 기간제 비율 : 44%

□ 예 산 : 11,479억원 ('26년)

(단위 : 억원)

고유출연금 (703억원) *기관운영지원 등			위탁사업 출연금 (10,776억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국방기술개발 (R&D)			방위산업 육성지원		획득지원	국방부 군수정책 지원
			핵심기술	부품 국산화	국방AI 선도	방산 육성	수출 지원		
321	38	344	6,279	1,335	6	2,083	961	47	65

* 국방기술·방산육성·수출진흥 임무 수행을 위한 조사·분석·기획·평가 등

4. 예산

□ 운영현황

- 설립 이후 연평균 26.7% 예산 증가('21년 3,539억 → '26년 11,479억)
 - 출범 초기에는 국방기술 R&D 투자 확대 방침과 연계하여 핵심기술 및 부품 국산화 등 기존 사업의 규모가 확대
 - '23년 이후에는 K-방산 4대 강국 진입 정책목표와 연계한 첨단방위 산업 육성 및 수출 관련 신규사업이 대폭 증가
- 방사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운영 노력 지속
 - 출범 초기에는 사업예산 집행 저조로 국회에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 받았으나, '23년도부터 90% 이상 실 집행 중('25년 96% 달성)
 - * 실 집행률 : '21년 77% → '22년 85% → '23년 90% → '24년 95% → '25년 96%
 - 사업 예산확보 및 집행·결산 간 현안 발생 시 방사청 담당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외부 기관 대응 수행 중

□ 향후 계획

- 방사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방 유일의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및 방산육성·수출진흥 전문기관으로 사업 및 예산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모든 부서가 방사청과 협업하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와 사업 운영 안정화 등에 적극적으로 경주하겠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예산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6 (B)	증감 (B-A)	(B-A)/ A	증감사유
계	990,459	1,147,909	157,450	15.9	
기관운영지원 (고유)	66,259	70,313	4,054	6.1	
인건비	30,281	32,072	1,791	5.9	전환인력 호봉상승분, 신규증원 23명 등
운영비	3,620	3,869	249	6.9	출산축하금 신설 및 채용경비 현실화 등
사업비	32,358	37,372	2,014	6.2	
정부출연금 예산	27,572	29,749	2,177	7.9	유형 개발성과물 관리 신규착수 등
연구개발적립금 사업비 재투자	4,786	4,623	△163	△3.4	
사업출연금 (위탁)	924,200	1,077,596	153,396	16.6	
국방기술개발	737,557	761,996	24,439	3.3	
기초연구	29,947	39,699	9,752	32.6	
개별핵심기술	156,254	155,939	△315	△0.2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127,830	133,532	5,722	4.5	R&D 예산확대에 따른 신규과제 증가 및 개별기술 단위 연구개발 비율 축소
패키지 핵심기술	423,526	432,185	8,659	2.0	
국방AI 선도연구협력	-	621	621	신규	중소기업 육성과 연계, AI분야 연구개발 확대
획득지원	4,380	4,674	291	6.7	
선행연구/분석평가	4,296	1,508	△2,788	△64.9	
선행연구	3,913	1,459	△2,454	△62.7	자체수행 확대에 따른 용역비 삭감
사전개념연구	383	49	△334	△87.1	과제인건비 이관
무기체계 공급망 관리	84	3,166	3,082	3,669.0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안정화 사업 본격화
방위산업육성지원	177,228	304,418	127,190	71.8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	2,521	3,614	1,093	43.4	
컨설팅 지원	720	781	61	8.5	중소기업 대상 지원 규모 확대

구 분		2025 (A)	2026 (B)	증감 (B-A)	(B-A)/ A	증감사유
계		990,459	1,147,909	157,450	15.9	
	방위산업 실태조사	70	-	△70	이관	과제인건비 이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1,731	2,473	742	42.9	방산기업 인력 수급을 위한 계약학과 확대
	방산 상생수준 평가	-	360	360	신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수준 평가 신규착수
	방위산업 수출지원	72,390	66,073	△6,317	△8.7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67,001	62,634	△4,367	△6.5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단기 감축 및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	1,730	1,695	△35	△2.0	과제인건비 이관
	방산수출 진흥지원	3,659	1,744	△1,915	△52.3	과제인건비 이관
	지역연계/ 생태계 기반구축	8,250	65,996	57,746	700.0	
	방산혁신클러스터	8,250	51,430	43,180	523.4	함정 MRO, 첨단기술 연계 클러스터 등 신규추진
	국방벤처기업 육성	(12,338)	14,566	2,228	18.1	중소기업 육성과 연계한 예산확대
	방산고도화지원	74,607	138,735	64,668	87.3	
	방산 중소 수출길 지원	14,234	21,061	6,827	48.0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규모 확대
	국방벤처기업 육성	12,338	(14,566)	2,228	18.1	2637-309로 이관편성
	방산혁신기업 100	39,869	65,832	25,963	65.1	AI, 반도체, 우주 등 기술보유 중소기업 지원규모 확대
	GVC 30	7,626	30,126	22,500	295.0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 프로젝트 확대
	소요연구 및 실증시험 패키지 지원사업	-	7,070	7,070	신규	민간 중소기업을 위한 전투실험 및 성능시험 지원 등 신규 수행
	K-방산 스타트업 육성	-	5,428	5,428	신규	방산 분야 스타트업 육성 신규 트랙 추진
	방산정책지원 통합인건비	-	9,218	9,218	신규	국회 지적에 따른 인건비 통합 편성
	방산수출 투자지원	20,000	30,000	10,000	50.0	방산 수출확대를 위한 펀드 출자 확대
	국방부 군수정책지원	5,035	6,508	1,473	29.3	

구 분	2025 (A)	2026 (B)	증감 (B-A)		증감사유
				(B-A)/ A	
계	990,459	1,147,909	157,450	15.9	
전력지원체계지원	5,035	6,508	1,473	29.3	전력지원체계 연구 개발 지원 규모 확대

5. 인원

□ 운영현황

- 국기연은 출범 이후 어려운 환경하에서 인력운영 중
 - '21년 법적 임무확대에도 인력증원 없이 출범
 - '22~'23년 예산의 급격한 확대시기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추진으로 충분한 인력증원 없이 기관을 운영 중
 - * '26년에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핵심기관으로 인정받아 정규인력 23명 확보
 - 정원 미확보에 따른 단기 대책으로 기존인력 운영 효율화와 기간제 예산 확대에 대응

[연도별 인력 추이 및 기재부 증원 검토 결과]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력(총원)	494명	556명	601명	646명	650명	686명
정규인력(정원)	369명	378명	372명	367명	359명	380명
기간제(편성)	125명	178명	229명	279명	291명	306명
총원 대비 정원	74.7%	68.0%	68.0%	56.8%	55.2%	55.4%

구 분	증 감	내 역
'25년 검토 → '26년 증원	23명	- 합정 MRO 시장 선점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 6명 - 수출전략연구 및 방산시장 분석 5명 - 국방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 4명 - 수출 무기체계 절충교역 기술지원 3명

		- 글로벌 공급망 진입(GVC 30) 지원 2명 - 국제 방산전시회 통합한국관 기획·운영 1명 - 방산 분야 정책펀드 조성·운영 1명 - 국방 AI 선도연구협력 1명 * 27년 한시
'24년 검토 → '25년 증원	1명	- 통합소요기획 비용분석 1명
공공기관 혁신계획 ('23년 반영)	△10명	- 정규직 8명, 무기계약직 2명 감축
'21년 검토 → '22년 증원	14명	- 선행연구 조사·분석 8명 - 산학연 핵심기술 과제관리 6명
'20년 검토 → '21년 증원	1명	- 연구소장 1명 (정규직으로 반영)

○ 前 정부의 정원감축·동결 여파로 인한 부작용 지속

- 정규인력 투입비율이 국방기관 및 다른 부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평균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50%대에 불과
 - 정규인력의 업무부담 과중으로 인해 근무지역 만족도 저하와 연계하여 중도 퇴직 비율 증가
- * ('21~'23년) 평균 10명 중도퇴직 → ('24년) 17명 → ('25년) 13명 중도 퇴직하였으며,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선임급에서 퇴직자가 증가

[24년도 기준 정규인력 투입률 비교 (ALIO 공시 자료 참고)]

구 분	총원 (A+B)	정규인력 (A)	기간제 (B)	투입률 (A)/(A+B)
국기연	646명	367명	279명	56.8%
기품원	730명	646명	84명	88.5%
국과연	3,750명	3,371명	379명	89.9%
연구관리 전문기관(17개) 평균	305명	281명	24명	92.1%

□ 향후 계획

- 정규직 소요발굴 및 확보를 위한 활동 지속

- 방사청 인증기획과(관리감독부서) 및 사업담당과와 지속 협업하여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신규 기획·추진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규직 확보에 집중
- 직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등을 통해 우수인력이 유입되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도 병행